

#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·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4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4. 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## 1. 제안이유

평창종부고령자복지주택 내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을 신규 설치·운영하고 관리할 법적 근거 마련과 더불어 기타 노인복지회관의 업무, 이용기준 및 시설 이용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평창공공노인복지회관 명칭 및 위치를 정함(안 제2조)
- 노인복지회관 업무 규정을 정함(안 제3조)
- 노인복지회관 시설분류를 현행화하여 정함(안 제4조)
- 노인복지회관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이용을 위해 이용가능 연령 확대 및 이용 제한 규정을 정함(안 제 5조)
- 노인복지회관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용허가 규정을 정함(안 제 6조)
-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및 이용료 납부 규정을 정함(안 제7조)

사. 위탁 운영 신청 시 성인지적 관점의 운영계획서 제출 규정을 정함  
(안 제8조)

아. 위탁 관리가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 
대한 배상 불가 규정을 정함(안 제9조)

자. 노인복지회관 운영의 합리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 
년 1회 이상 지도 및 감독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함(안 제11조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자료 참고

나. 예산조치 : 붙임자료 참고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(2024.02.07. ~2024.02.1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3) 부패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4)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

## 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·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평창군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창군 노인복지회관(이하 “노인복지회관”)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 및 위치)** 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.

**제3조(업무)** 노인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.

1. 노인 교양·취미활동 및 교육 사업
2. 노인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사업
3.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사업
4. 그 밖에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**제4조(시설)**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회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.

1. 사무실
2. 강당 및 프로그램실
3. 휴게 공간
4. 건강증진실

5. 식당

6. 그 밖의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

**제5조(이용)** ① 이용대상은 평창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과 동반한 배우자로 한다.

② 식당 이용의 경우 공식 방문자, 프로그램 강사, 자원봉사자, 근무자 등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한다.

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인복지회관의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.

1.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경우

2.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

3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에 따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람

4.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

5.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

6.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**제6조(사용허가)** ①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,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

2.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

3.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

있는 경우

- 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허가받아야 한다.
-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시설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하고, 별지 3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 대장에 따라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- ④ 시설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으면 납부기한까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.

**제7조(사용료 등)** ①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(이하 “사용료 등”이라고 한다)를 납부해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은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,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.

- 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주관하거나 지원하는 행사
- 2.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
- 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

③ 시설사용 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군수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.

④ 제8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승

인을 받아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.

- 제8조(위탁관리)** ① 노인복지회관은 군수가 운영·관리한다. 다만,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한노인회 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평창군지회 또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(이하“수탁자”라 한다)에 위탁·관리하게 할 수 있다.
- ② 노인복지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 운영 신청서(성인지적 관점의 운영계획 포함)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제8조제1항의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.
- ④ 제3항의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갱신할 수 있다.
- 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,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한다. 다만, 예산 이외의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.

**제9조(위탁의 정지 또는 취소)** ①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될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여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
2. 노인복지회관을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
3. 운영 능력을 상실하였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할 경우
4. 노인복지회관의 운영관리 및 감독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
5. 제8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

6.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였을 때

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가 해지·중지·취소되었을 때 수탁자가 입은 피해 및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**제10조(수탁자의 의무)** 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유지·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.

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대금 상당액 이상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수탁자가 노인복지회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는 등 원래 상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 수탁자는 제8조제5항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 「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수하여야 한다.

⑤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복지회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,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·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.

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지도 및 감독)** ① 수탁자는 노인복지회관 관리에 대한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.

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1회 이상 시설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,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,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11조제1항의 지도감독 및 제11조제2항의 조사결과 시정 등의 조치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손해배상)** 노인복지회관 시설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**제13조(준용)**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노인복지법」,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, 「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**제14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별표 및 별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평창군 노인복지회관의 명칭 및 위치

명 칭	위 치	비 고
평창군노인복지회관	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용평면 갈정지길 6	지하1층/ 지상3층
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	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89, 1층	지상1층

[별표 2]

노인복지회관 사용료 등

구분		기준	금액(원)	비고
사용료	다목적 강당	1회 (2시간 이내)	3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토·일요일, 공휴일 및 야간 20% 가산</li> <li>○ 2시간 초과 시 시간당 20% 가산</li> </ul>
	프로그램실	1회 (2시간 이내)	10,000	
이용료	수강료	강의당	무료	○ 재료비 등 필요시 별도 수납
	식당	1식	3,500	
	건강증진실	-	무료	

[별표 3]

노인복지회관 사용료 등 반환기준

구 분	반 환 기 준	반환금액
사용료 이용료	1. 복지회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.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3. 이용자의 사정으로 <u>이용개시일 3일전</u> 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	전액
	4. 이용자의 사정으로 <u>이용개시일 1일전</u> 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	납부한 금액의 50%
	5. 이용자의 사정으로 <u>이용개시일 당일</u> 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	없음

## 시설 사용신청서(제6조제2항 관련)

신 청 인	단체(시설)명		사업자등록번호 <small>(개인의 경우 생년월일)</small>	
	성명(대표자)		전 화 번 호	
	주소			
사용 시설	기본시설			
	부대시설			
사용기간				
사용목적				
사용인원				
면제신청 여부 및 신청사유		<input type="checkbox"/> 신청(신청사유 : _____ ) <input type="checkbox"/> 미신청		
<p>「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노인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_____ 년    월   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신청자 : _____ (서명 또는 인)</p> <p>평창군수 귀하</p>				
<b>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동의서</b>				
<p>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시설사용 신청을 목적으로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제1항제1호(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), 제17조제1항제1호(개인정보의 제공)에 의거 다음의 정보를 이용하는데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.</p> <p>①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 : 시설사용 신청</p> <p>②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: 단체(시설)명, 성명(대표자 성명), 사업자등록번호(생년월일), 전화번호, 주소</p> <p>③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: 사용신청 후 5년 동안 보유 후 폐기</p> <p>④ 거부권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: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·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거부할 경우 시설 사용 및 이용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</p>				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<span>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?</span> <span>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함</span> <span>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</span> </div>				

## 시설사용 허가서(제6조제3항 관련)

허가번호			
사 용 자	단체(시설)명	사업자등록번호 <small>(개인의 경우 생년월일)</small>	
	성명(대표자)	전화번호	
	주소		
사용 구분	기본시설		
	부대시설	<input type="checkbox"/> 방송시설 <input type="checkbox"/> 냉·난방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
사용기간 및 시간			
사용목적			
행사내용			
사용료		금            원	
사용료 면제 사유			
허가조건		1. 건물과 부대시설을 훼손, 멸실 또는 허가 없이 구조를 변경했을 경우 지체없이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. 2. 노인복지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허가를 취소, 중지할 수 있습니다. 3. 정해진 기간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.	

「평창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복지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합니다.

          년        월        일

평창군수

직인





# 관계법령 발췌

## □ 노인복지법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# 비용추계서(제3조제1항 관련)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- 비용발생 요인 :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위하여 인건비, 사업비 등 발생하며  
노인 복지회관 위탁 시 예산 범위 지원 필요
- 관련조문 : 안 제8조제5항

## 2. 비용 추계결과

### 가. 추계의 전제

- 복지회관의 위탁금은 군비사업으로 운영되며, 노인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(연 1.7% 인상), 운영비(연 1.2% 인상) 등 소요예산 항목별 적용
-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개소(2024년 상반기 예정)에 따라 지급 대상이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되며 인건비 지원인력은 1명에서 3명으로 증가  
⇒ 2024년 운영 인력 : 평창군노인복지회관 1명,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2명
- 2023년 예산 편성액 : 110,353천 원(평창군노인복지회관 1개소)  
⇒ 인건비 33,442천 원, 운영비 76,911천 원
- 2024년 예산 편성액 : 183,000천 원  
(평창군노인복지회관 ,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등 2개소)  
⇒ 평창군노인복지회관(1년) : 인건비 34,654천 원, 운영비 78,346천 원  
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(6개월) : 인건비 38,140천 원, 운영비 31,860천 원

### 나. 추계 결과

- 세입 : 14,350천 원  
- 식당이용료 : 3,500원 × 25명 × 164일 = 14,350,000원

○ 세출 : 258,482천원

내역	산출기초(2024년)	예산액(천원)	비고
합계		258,290	
인건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평창군노인복지회관(1명, 12개월) : 34,654천원</li> <li>- 34,654천원 × 2명=34,654천원</li> <li>·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(2명, 8개월) : 40,440천원</li> <li>- 20,220 × 2명=40,440천원</li> </ul>	75,094	군비
운영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평창군노인복지회관 : 78,346천원</li> <li>· 평창공공실버복지회관 : 104,850천원</li> </ul>	183,196	군비

다. 자원조달 방안 : 자체 자원(2024년 당초예산 및 2024년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)

### 3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장 이정의
연락처	(033) 330 - 2124